#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

## <목 차>

1.미사용약정 및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근거 마련

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	이름	윤송이
소관부처 및	담당부서 (과)	중소금융과	작 성	직급	행정사무관
작성자 인적사항	국장	이형주	I	연락처	02-2100-2983
	과장	김종훈		이메일	2081001@mail.go. kr

2021. 08. 24. 작성

정책책임자직위 성명 (서명)

## < 규제 개요 >

	1.규제사무명	미사용약정 및 지급보	증에 대한 대손충딩	방금 설정 근거 마련						
기본	2.규제조문	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	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, 제11조							
정보	3.위임법령	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의20조								
	4.유형	강화 <b>5.입법예고</b> 2021.08.26 ~ 2021.10.07								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인출될 가능성 등으로 유동성 압박 초래 가능	인해 금융회사에 급 현은 한도성 여신 및 한도성여신에 대한 며, 충당금이 과소하기 문성여신 및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에 대해 있지 않음 말 지급보증에 대해 있지 않음 약업권은 한도성여신 수준 로 증가한 서민 자금 여신금융업권 등 2등 도성여신 등의 건전 한 충당금적립을 의무 인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권간 규제 차이도	사용한도와 부동산PF 채 중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서는 별도의 충당금 적 의 미사용금액은 12.3조 금수요가 은행 등의 신용 금융권의 한도성여신으로 성 제고 및 리스크 방지 화할 필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.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						
	7.규제내용	□ 여신금융업권의 한도 류 및 충당금 적립의무		등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						

## 〈조무 대비표〉

〈소문 대비표〉						
현 행	개 정 안					
제9조(자산건전성 분류 등) ① 법 제5	제9조(자산건전성 분류 등) ①					
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0						
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						
융회사는 허가 받거나 등록받은 업						
별로 다음 각호의 보유자산과 대출						
금, 할인어음, 팩토링, 유가증권, 미						
수금, 가지급금, <u>확정지급보증</u> (부동	<u>지급보증</u>					
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						
은 제외한다), 부동산프로젝트파이						
낸싱 관련 <u>채무보증에</u> 대하여 정기	<u>채무보증, 미사용약정</u>					
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.			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			
<u>&lt;신 설&gt;</u>	5.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					
	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					
	<u>는 자산 등</u>					
② ~ ⑧ (생 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					
제11조(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) ①	제11조(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) ① -					
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						
조의20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						
전문금융회사는 결산시(매분기 가						
결산을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						
다) 결산일 현재 채권 및 리스자산						
(미수금중 관련분 포함, 운용리스자						
산 제외), 카드자산, <u>신용카드 미사</u>	<u>미사용약정, 지</u>					
<u>용약정</u> , 여신성가지급금, 미수이자,	급보증(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					
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	런 채무보증은 제외한다),					
보증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5항에						

											과소적립이	여
신금	융회/	나의	건전성	을 악회	화시키	는	것을	방지	하기	위형	해,	

- 한도성여신 및 지급보증에 대해 다른 자산처럼 건전성을 분류 하고, 신용환산율\*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
- \* 한도성여신의 경우 업권 부담을 고려하여 신용환산율의 단계 적 적용: ('22년) 20% → ('23년) 40%

여신전문금융회사

## 8. 피 규제 집 단 이해관계자

	유 형	인원수 또는 규모
피규제자	여신전문금융회사	121개사

## 기대효과

(단위:백만원)

9.도입목표 및 여신금융업권의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규모가 확대되는 등 위험관리체계가 강화되고. 각 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 기여

				비용	편익		순비용	-
		피규제자	5	52,864.78			52,864.7	8
		피규제자 이외						
					한도성0	1신		
		정성분석			관련			
		0057			금융리스	<u>≥</u> ∃		
규제의					감소			
적정성			-	성 여신 등			성 분류 및	
			금 적립의무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한도성 여신					
		주요내용	과 관련된 금융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상호					
			금융업권 전반의 건전성을 제고					
			편익	분석에 대히	내서는 금액	을 정	확하게 산출	하기
				워 정성분석				
	11.영향평가	기술영향평가		경쟁영향평가		중	기영향평기	<b>'</b> }
	여부	해당없음		해당없음		해당없음		
	1 2 . 일 몰 설 정 여부	해당없음						
	13. 우선허용·							
기타	사후 규제	해당없음						
•   -	적용여부							
	14.비용관리제	적용여부		비용	편 익	연	!간균등순비	비용

52.864.78

0

6.981.63

미적용

현 행	개 정 안
따라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	
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「주식회사	②
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제13조	
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	
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	
정한 회계처리기준(이하 "한국채	
택국제회계기준"이라 한다)을 적	
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회	
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,	
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	
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	
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	
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결산일 현재 신용카드 미사용약	5. 미사용약정(상품 또는 계약의 명
정에 대하여 제3호 및 제4호 각	칭을 불문하고 약정한도, 약정기
목에서 정하는 적립률에 100분의	간 등을 사전에 정하고, 필요한 지
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	금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ㅊ
	입 및 상환할 수 있는 대출의 ㅁ
	사용약정)에 대하여 각 목에서 경
	하는 금액
	가. 결산일 현재 제2조제1항제3호
	가목 및 나목에 대하여 제3호
	및 제4호 각 목에서 정하는 즉
	립률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
	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

현 행	개 정 안
	나. 결산일 현재 제2조제1항제3호
	가목 및 나목 외 미사용약정에
	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 각
	목에서 정하는 적립률에 신용
	<u>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</u>
	<u>산정한 금액</u>
<u>&lt;신 설&gt;</u>	6. 지급보증(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
	관련 채무보증은 제외한다)에 대
	하여 제1호 또는 제4호 각 목에서
	정하는 적립률에 따라 산정한 금액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- 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- 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- □ 한도성여신, 지급보증(이하 '한도성여신 등')은 자금이 일시 인출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급격한 익스포져 증가 및 유동성 압박 초래 가능
- 이를 감안하여 **은행·보험업권**은 이러한 여신 특성을 반영한 **위험관** 리체계<sup>\*</sup>를 마련하여 동 여신 취급유인을 통제하고 있으나,
- \* 미사용금액 등에 대해서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부여 등
- 여신금융업권을 포함한 2금융권은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황
- □ 여신금융업권의 경우 신용카드 미사용한도·부동산PF 채무보증 등 일부 한도성여신과 지급보증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적립 중으로,
- 그 외 한도성여신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산선전성 분류 및 충 당금 적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
- \* '20년말 여신금융업권의 한도성여신 미사용금액은 12.3조원, 지급보증은 0.8조원 수준
- 다만, 규제 공백으로 인해 동 여신에 대한 **대손충당금 적립이 의** 무화되지 않아, 대손충당금의 과소 적립 우려 및 향후 리스크 실현 시 부실 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
- □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증가한 서민 자금수요가 은행에서의 신용대 출규제 강화로 인해 여신금융업권 등 2금융권의 한도성여신으로 이동할 우려가 있는 바,
- 여신금융업권의 한도성여신 등의 건전성 제고 및 리스크 방지를 위해 동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할 필요

- □ "관계기간 합동「가계부채 관리방안"20.4.29)」"을 통해, 은행·보험 외 2 금융권에도 한도성여신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할 것이 발표되었으며,
  - 규제형평성 측면에서 한도성여신에 대해 **은행·보험과 동일한 신** 용환산율 40%<sup>\*</sup>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여할 것과,
    - \* 은행·보험은 '23년부터 단일 신용환산률 40% 적용 예정
  - 규제 도입에 따른 업권별 부담 및 영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
     시해하는 것을 검토\*
    - \* (여신금융) ('22년) 20% → ('23년) 40%
- □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「여신금융업감독규정」도 **한도성여신 등**에 대해 **건전성을 분류**하여 **신용환산율 적용 및 충당금 적립의무를 반영토록 개정**할 필요
- 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- ① 대안의 비교
- o 규제대안의 내용

	대안명	감독규정에 여신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단계적 도입
규제대안1	내용	여신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하며, 충당금적립 시 적용되는 신용환산율 40%를 단계적으로 시행(20%→40%) 토록 반영
	대안명	감독규정에 여신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즉시
규제대안2	내용	여신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하며, 충당금적립 시 적용되는 신용환산율 40%를 일률적으로 즉시 도입

#### o 규제대안의 비교

구분	장점	단점
규제대안1	여신금융업권의 건전성 강화 및 업권 내 규제도입 부담 최소화	단계적 도입에 따라 다른 금융업권과 일시적인 규제차익 발생
규제대안2	업권간 규제차익의 신속한 해소와   건전성 강화 가능	충당금 추가적립 등 규제도입으로   인해 단기적인 건전성지표 악화 우려

##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여신금융업권	규제 도입 필요성에 찬성	특이사항 없음
금융감독원	규제 도입에 찬성하나, 업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준비 및 적용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	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

####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

□ 여신금융업권의 <sup>①</sup>건전성 강화와 <sup>②</sup>규제 도입에 따른 업권 부담 최 소화를 모두 고려하여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

#### 3. 규제목표

□ 타 금융권(은행·보험)에서 시행 중인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기준을 마련하여 여신금 융업권의 경영건전성 강화 및 업권간 규제형평성 제고

#### Ⅱ. 규제의 적정성

## 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□ 여신금융업권은 **은행・보험업권들과 마찬가지로 한도성여신 등**을 취급하고 있으나.
- 한도성여신 등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의무에 대 해 적용되는 규제가 업권마다 상이하여 규제차익 발생 중

#### <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금융업권 위험관리(대손충당금 적립의무) 현황 >

구분		은행·보험 저축은행		여	상호금융	
	丁匠	드용.포함	시독단병	카드	캐피탈	유지교육
충당금 적립의무	한도성여신	0	×	△ (신용카드만)	×	×
역립의구 여무	지급보증	0	0	△ (PF대출만)	△ (PF대출만)	(취급금지)

□ 이에 여신금융업권을 포함하여 2금융권 한도성여신의 위험관리체계 (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등)를 은행·보험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업권간 규제차익도 해소하는 것으로 비례타당성 존재

#### < 2금융권의 한도성여신 등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>

구분			충당금 적립 여부 (신용환산율(%))		
			기존	개선(안)	
저축은행	한도성여신		×	('22)20% ('23)40%	
	지	급보증	100%	(좌 동)	
	한도성 여신 (기존)	신판 현금서비스 카드론	50%	('23)40%	
여신금융	(신규)	기타 한도성 여신	×	('22)20% ('23)40%	
	지급	부동산PF	100%	(좌 동)	
	보증	부동산PF外	×	100%	
상호금융	한도성여신		×	('22)20% ('23)30% ('24)40%	

#### 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	영향평가	
기술	경쟁	중기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## o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- : 해당없음
- 경쟁영향평가
- : 해당없음
- 중기영향평가
- : 해당없음
-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
- : 해당없음
- o 기타 고려사항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- : 해당없음
- 일몰설정 여부
- : 해당없음
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 여부
- : 해당없음

## 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#### o 해외사례

: 해당사항 없음

## o 타법사례

: 은행 및 보험업권에서도 감독규정상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 위험관리체계를 기 도입하고 있음

## 4. 비용편익 분석

〈규제대안 1 : 감독규정에 여신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즉시〉

① 비용편익분석 : 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 직접비용 52.864.78백만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20	2022	10	4.5	백만원, 현재가치

규제대안 1 : 감독규정에 여신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 및 대손총당금 적립의무 즉시
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	직접	52,864.78		52,864.78
· 소상공인	간접			
피규제 일반·	국민			
피규제자 이외	기업			
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				
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52,864.78		52,864.78
기업순비용		52,864.78	연간균등순비용	6,981.63
	_	0=,00 0		3,55

#### Ⅲ. 규제의 실효성

#### 1. 규제의 순응도

##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: "관계기간 합동「가계부채 관리방안'20.4.29)」 발표"를 통해 검토 및 논의된 사항으로 여신금융업권은 일정 유예기간 부여시 충분히 준수 가능하며, 금감원의 지속적인 검사·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가능

## 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## o 행정적 집행가능성

: 금감원의 검사·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 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

## o 재정적 집행가능성

: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

## 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## 1. 추진 경과

: "관계기간 합동「가계부채 관리방안('20.4.29)」 발표"를 통해 검토 및 논의되었던 '2금융권의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강화'를 위해 여신금융업권에도 동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 충당금 적립의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

## 2. 향후 평가계획

: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('21년도 하반기) 이후 유예기간동안 해당 규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·감독할 예정

#### 3. 종합결론

: 한도성여신 등을 대상으로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동 여신 취급에 대한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, 금융업권간 규제차익을 해소함으로써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 완화 및 규제형평성 제고



##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

#### 가, 대안별 분석 비교표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20	2022	10	4.5	백만원, 현재가치

규제대안1 : 감독규정에 여신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즉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지점 52.864.78 52.864.78 · 소상공인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52.864.78 52.864.78 기업순비용 6,981.63 52.864.78 연간균등순비용

####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

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의무 등을 마련함으로 써 향후 한도성 여신과 관련된 금융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상호금융업 권 전반의 건전성을 제고편익분석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 워 정성분석 실시

#### 나,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편익 분석 결과

〈규제대안1 : 감독규정에 여신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즉시〉

####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:

#### □ 직접비용

(정량)세분류	여신전문금융회사
활동제목	대손충당금 적립의무 신설에 따른 여신금융업권의 대손충당 금 추가적립
비용항목	기타
비용	52,864,783,382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/비균등/비정률
산식	□ (규제비용 산출산식) 규제 도입에 따른 '20년말 대비 대손 충당금 추가적립액(신용환산율 40% 기준)×전년 대비 당해연도 신용환산율 증가수준(신용환산율 40% 대비)'  * 여신금융업권은 신용환산율 40% 도입에 대해 '22년 : 20%(전년 대비 △20%p), '23년 : 40%(전년 대비 △20%p)순으로 점진적으로 도입  ○ ('22년) 규제도입에 따른 '20년말 대비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(신용환산율 40% 기준)*(2/4=△20%p/△40%p)  ○ ('23년) 규제도입에 따른 '20년말 대비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(신용환산율 40% 기준)*(2/4=△20%p/△40%p)
근거설명	□ (근거설명)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신설 시 여신금융업권은 추가적인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규제비용이 발생함에 따라,  ○ 여신금융업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을 산정하여 동규제도입에 따른 비용 도출  - (가정)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도입, 신용환산율 40% 적용을 가정하여 산출  - 이에 '20년말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액의 증가액을 산출하였으며 총 59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< 여신금융업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 증가 현황>

구분		(20 <sup>1</sup> t/a)	신용환산율	증감(b-a)	
		'20말(a)	40% 적용(b)	금액	비율
<b>*</b>	대상자산	3,671,906	3,722,702	50,796	+1.4
충 당	요적립액	55,887	56,477	590	+1.1
금	실적립액	63,403	<u>63,994</u>	<u>590</u>	+0.9
	충당금적립율	113.4	113.3	Δ	0.1

- ※ 이미 대손충당금을 적립 중인 신용카드 미사용금액(399조원)은 제외
- 다만, 업권 부담 완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신용환산율(40%)을 점진적으로 도입('22년: 20%, '23년: 40%) 하므로,
- 연간 규제비용은 위 대손충당금의 추가적립액(신용환산율 40% 기준)을 전년 대비 당해연도에 적용되는 신용환산율 증가수준에 따라 배분하여 산정함
- 1) '22년에 적용되는 신용환산율은 20%(전년 대비 △20%p) 이므로 총 신용환산율 도입수준인 40%(△40%)와 대비 하여 2/4 적용
- 2) '23년에 적용되는 신용환산율은 40%(전년 대비 △20%p) 이므로 총 신용환산율 도입수준인 40%(△40%)와 대비 하여 2/4 적용
- ※ '23년 이후로는 신용환산율의 증가가 없으므로 별도의 비용발생이 없음

#### □ 직접편익

(정성)세분류	여신전문금융회사
활동제목	한도성여신 및 지급보증 관련 금융리스크 감소
편익항목	기타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/
근거설명	<ul> <li>□ 한도성 여신 등은 거액의 자금이 일시 인출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회사에 갑작스러운 익스포져 증가 및 유동성 압박 등의 금융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나,</li> <li>○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의무 등을 도입하여 해당 금융리스크에 대비함으로써 여신금융업권 전반의 금융리스크 감소가 가능함</li> <li>○ 다만, 이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워 정성 분석 실시</li> </ul>

#### 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:

□ 편익

(정성)세분류	기업 및 소상공인
활동제목	한도성여신 등 관련 금융리스크 감소 및 전이 방지
편익항목	기타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/
근거설명	<ul> <li>□ 한도성여신 등 관련 리스크 발생으로 인해 상호금융업권이 부실해지거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,</li> <li>○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및 투자 위축, 실물 경제 악영향 등의 문제가 발생 가능하나,</li> <li>-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등을 통해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전이될 수 있는 금융 리스크가 감소</li> <li>- 다만, 이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워 정성 분석 실시</li> </ul>

####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:

□ 편익

(정성)세분류	일반 서민금융이용자		
활동제목	한도성여신 관련 금융리스크 감소 및 전이 방지		
편익항목	기타		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/		
근거설명	<ul> <li>□ 한도성여신 관련 리스크 발생으로 인해 여신금융업권이 부실해지거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에</li> <li>○ 중,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이 감소될 수 있고 실물 및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나,</li> <li>- 대손총당금 적립의무를 도입함으로써 일반 서민금융이용 자에게 전이될 수 있는 금융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음.</li> <li>- 다만, 이에 대해 정량 분석을 하기 어려워 정성 분석 실시</li> </ul>		